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77
------	-----

2011. 6. 28.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1년 6월 13일

나. 제안자 : 김광수(노원)·김인호 의원외 30명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보조금 사업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의 신고사항과 사업비 정산검사, 사업진행 보고서 제출 등의 신설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 권한을 확충하는 등 현행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리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호신설).
-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예산 반영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지방자치법상의 예산안 제출 기한(회계연도 개시 50일)인 11월 11일까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알리도록 함(안 제10조).
-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조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 보조사업의 개시, 완료, 중지, 폐지 또는 보조사업의 명칭·주소변경, 보조사업 수행단체의 해산 또는 파산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25조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방법, 각종 신고사항과 정산,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보다 자세히 규정해 보조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보조금 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각종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비위에 대응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한 예산 집행 기초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와 안 제17조, 안 제24조 등에서 법령의 사항을 재차 강조해 조항을 수정하거나 일부의 경우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예산의 의회 제출기한인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으로 수정해 예산편성 등에 관한 행정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안 제20조제2항을 신설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사용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서울시가 2009년 4월 1일부터 사회복지 보조금의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정부의 경우에도 문화관광체육부 등에서 보조금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 밖에도 안 제25조는 서울시가 조례에 규정 없이 이미 지난 2009년 2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조치도 합당한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제4조 보조대상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에는 기부금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4조의 보조대상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는 기부금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정 기부금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4조제4호에서 지정 기부금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4조제4호)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 2011년 6월 28일

발 의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4조의 보조대상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는 기부금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정 기부금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가. 안 제4조제4호에서 지정 기부금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 단서조항을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신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략)</p> <p>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p>제5조 ~ 제26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보조대상)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개정안과 같음)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p>제5조 ~ 제26조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다른 법령에”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예산계상”을 “예산반영”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예산반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지정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 시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0조 중 “11월 15일까지”를 “11월 1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u>다른 법령에</u>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u>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u>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p>
<p>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u>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u>
<p>제5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u>예산계상을</u>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이나 시장이 시의 정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u></p>	<p>제5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u>예산반영을</u>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보조금의 예산반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정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u> 2. <u>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u> 3. <u>그 밖에 시장이 주요 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u>

현행	개정안
<p>제10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알려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0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7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p>②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0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p> <p>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60 331 758 360"><신설></p> <p data-bbox="783 331 1361 701">제20조의2(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p data-bbox="660 734 758 763"><신설></p> <p data-bbox="783 734 1361 1025">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p> <p data-bbox="783 904 1361 1025">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p> <p data-bbox="181 1059 758 1301">제24조(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u>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 data-bbox="204 1397 758 1469">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p> <p data-bbox="660 1507 758 1536"><신설></p> <p data-bbox="660 1659 758 1688"><신설></p>	<p data-bbox="783 1059 1361 1384">제24조(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u>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u>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 data-bbox="805 1397 1361 1469">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p> <p data-bbox="783 1507 1361 1628">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p> <p data-bbox="783 1659 1361 1731">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